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10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57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제220285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 설비의 설치 의무화(안 제49조제6항)	2

I. 김위상의원안(제220285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위상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8. 14.

다. 회 부 일 : 2024. 8.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필요한 화재 안전 사항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지하주차장 등 실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진화가 힘들어 주변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에, 새로 설치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는 방화 셔터를 포함한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3. 검토의견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 설비의 설치 의무화(안 제49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¹⁾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중 새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것임.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이하 생략)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화재 역시 증가하는 추세²⁾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안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방화구획(防火區劃)³⁾이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공간을 차단하는 구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확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여짐.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건축법」은 건축물이 가져야 할 공통적인 기본 요건에 대해 규정하는 일반법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과 같은 특정 시설에 요구하는 개별 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어려움.

2)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건수(자료: 국토교통부)

- 2021년(24건), 2022년(44건), 2023년(72건)

3)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한, 「건축법」은 주차장의 구조·주차면 수·충전시설·전용구역 등 주차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 시행령」⁴⁾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⁵⁾은 ‘건축물의 특정 용도’가 아닌 ‘모든 건축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적·계단실·승강장 등에 대하여 방화구획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주차장의 전반적인 설치기준을 가진 「주차장법」 또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이하 생략)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이하 생략)

를」 같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의 소방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제2202625호)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제2202625호)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① ~ ⑫ (생략)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① ~ ⑫ (현행과 같음)
<신설>	⑬ <u>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셔터, 소화수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u>
제16조(과태료) ① <u>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u> 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조(과태료)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신설>	1. <u>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u>
<신설>	2. <u>제11조의2제13항을 위반하여 소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585

참고

방화구획 구성자재 및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 ⑦ (생략)

〈내화구조, 방화구획 구성 자재〉

내화구조	방화구획 구성 건축자재			
	방화담퍼	방화문	방화 셔터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의 기준〉

단위 구획의 종류		구획의 기준		구획의 구조
수직구획 (층단위)	매 층마다	바닥면적의 규모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각 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내화구조의 벽·바닥 ▶방화문, 셔터 등
수평구획 (면적단위)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3,000㎡) 이내마다 구획		
	11층 이상의 층	실내마감재가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200㎡(*600㎡) 이내마다 구획	
		실내마감재가 불연재료인 경우	500㎡(*1,500㎡)이내마다 구획	

* () 내의 숫자는 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의 기준 면적